

의안번호	제 152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5년 4월 13일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15. 4. 13.

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기구를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한시기구 중 존속기한(2015. 8. 31.까지)이 도래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삭제함(안 제7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2) 입법예고(2015. 3. 13. ~ 2015. 4. 2.): 특기할 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행정관리국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한시 기구로 하며,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7조(행정관리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5조(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)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·독자성·계속성
2.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
3.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
4.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
5. 통솔 범위,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
6. 사무의 위탁 가능성

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한시기구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분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